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마포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

- 1)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둠(안 제3조)
- 2)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·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)

### 나. 위원회의 구성

- 1)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(안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)
- 2) 위원은 건축·도시계획·조명·조경·조형예술·색채·환경·디자인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관계 공무원, 그 밖에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함(안 제4조제3항)

**다. 소위원회**

-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**라. 의견청취**

-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**마. 수당 등**

-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
**3. 조 례 안 : 따로붙임**

**4. 예산조치 : 2009년 예산 편성시 위원 수당 · 여비 반영**

**5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(2008. 6. 19 ~ 7. 9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 7. 24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도시디자인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도시경관을 보전·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의 형태·윤곽·색채·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조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 별표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구 소속 부서(기관)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5. 그 외 도시디자인의 추진 및 도시경관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한다.

1. 건축·도시계획·조경·조형예술·색채·환경·조명·디자인 등의

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2. 관계 공무원

3. 그 밖에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,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위원장이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소위원회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록 등의 비치)**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·자문한 결과록을

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준수)**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3. 가로시설물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 고
도로부속 시 설 물	가. 가로등 나. 도로명판	
문화관광 시 설	가. 관광안내소 나. 관광안내도 다. 각종 안내표지판 라. 동상·기념비 등(「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)	
가로녹지 시 설	가. 가로수 보호덮개 나. 가로 녹지대 다. 가로 화분대 라. 분수대	
환경관리 시 설	가. 휴지통 나.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. 공중화장실 라. 대기오염 전광판	
교통관련시설	가. 보행자안내표지 나. 택시·마을버스·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. 정류소 표지판 라. 택시 표지판 마. 자전거보관대 바.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. 주차장 관리소(박스형) 아. 부설주차장 진·출입표지 자.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. 교통 감시시설	※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
지하철시설	가. 지하철출입구(캐노피를 포함한다) 나. 지하철안내표지판 다. 환기구(흡·배기구) 라. 지상노출 엘리베이터	

분 류	시 설 물 의 종 류	비 고
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(미관지구 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한한다)	가. 분전함·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- 가로등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- 변압탑, 무선전화 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,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교통량검지기, 우체통,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-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. 사설안내표지·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. 가로 판매대·구두 수선대·버스카드 판매대·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(노점, 자동판매기, 상품진열대) 라.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, 점포, 창고, 자동차주차장, 광장, 공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※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